

의안번호	2217854
의 퇴 인	권향엽 의원
회 답 일	2026. 5. 26.
추 계 번호	26A1821

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6조(세제 및 자금 지원)	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(이하 “입주외국인투자기업”이라 한다) 및 국내복귀기업(이하 “입주국내복귀기업”이라 한다)에 대하여 「조세특례제한법」, 「관세법」 및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음(제1항)	재량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등 근거 규정
1	안 제16조(세제 및 자금 지원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□ 안 제16조제1항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세제 및 자금지원 대상 기업의 범위가 현행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내복귀기업”에서 “국내복귀기업”으로 확대되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
○ 이때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내복귀기업”이란, 지역 간의 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경제자유구역위원회가 선정한 국내복귀기업을 말함¹⁾

－ 국내복귀기업²⁾은 「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7조에 따라 지

1) 「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14조의3(입주국내복귀기업) 법 제16조제1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내복귀기업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원회가 선정한 국내복귀기업을 말한다.

1. 지역 간의 균형발전
2. 입주대상 국내복귀기업의 고용창출 규모
3. 입주대상 국내복귀기업의 업종과 투자규모

2) 「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6. “국내복귀기업”이란 「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7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

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을 말함

- 현행법 제16조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위원회가 선정한 국내복귀기업에 대해서는 국세 및 지방세 감면(제1항), 부지 조성 지원 등 자금지원(제2항) 등이 가능함
 - 다만, 국세 및 지방세 감면의 경우 「조세특례제한법」, 「관세법」 및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개정안만으로는 조세수입의 감소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

-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향후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할 국내복귀기업의 수, 해당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의 규모 등을 추정하여야 하나, 현시점에서 이를 합리적으로 추정하는데 한계가 있음
 - 참고로, 산업통상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으로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국내복귀기업 수는 8개이며,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국내복귀기업 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

[표 1]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국내복귀기업 현황

(단위: 개)					
구 분	2021	2022	2023	2024	2025
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국내복귀기업 수	3	5	5	7	8

자료: 산업통상부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된 기업을 말한다.

「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7조(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선정)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및 정착 지원을 위하여 국내복귀기업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.

1. 「외국인투자 촉진법」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받은 기업으로서 10년 이상의 기간 경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였을 것
2. 해외사업장을 축소한 기업의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외사업장의 축소가 이루어졌을 것
3. 그 밖에 국내복귀기업 지원의 정책적 목적 달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I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추계세제총괄과	윤주철	김신애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윤주철	02-6788-4655	yjc@nabo.go.kr